

## 보내는 사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 
(낙원동, 종로세무서)

종로 세무서장

0 3 1 3 3

\*상담전화 ☎ 02 760 9426



## 받는 사람

9 0 7 0 1 8 2 5 1 2 3 0 0 0 0 2 4 2 0 0 8 8 1

3794161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33  
(체부동)

재단법인 장호테니스재단

김두환 귀하

0 3 0 4 1

(동)

A1 (동서울) 110 (광화문) 02 03



## '26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결과 안내

- 안녕하십니까?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- 귀 단체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**2026년 9월 30일**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**공익법인**으로 **지정·고시**되었습니다.  
**지정기간** (신규지정) 2026.1.1.~2028.12.31. / (재지정) 2026.1.1.~2031.12.31.
-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「법인세법」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, 그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공익법인 지정·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·신고하여야 하며,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 » 공익법인 전용계좌 홈택스 신고방법

**경로** 홈택스 > 세무 업무 가이드 맵(Map) > 공익법인종합안내 > ③신고/보고 >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

\*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이미 신고한 단체는 신고할 필요 없으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경우, 사유발생일(개설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개설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**국번 없이 126**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126번 > 2번(세법상담) > 7번(상속세, 증여세) > 상담사 연결

국 세 청 장 (직인생략)

# 공익법인 의무사항

## 법인세법상 의무사항

-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한함)
  -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  -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  -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·국세청·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기관 홈페이지와 해당법인 홈페이지를 연결할 것
-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-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(단,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§43의5④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)
-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-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-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
-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-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
-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(단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§43③ 및 ④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협력의무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의무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전용계좌<br>개설·신고·사용  | 대 상  | 모든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기한 |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출연재산<br>보고서 제출    | 대 상  |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기한 |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결산서류 공시           | 대 상  | 모든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<br>다만, 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기한 |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외부전문가<br>세무확인서 제출 | 대 상  |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,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기한 |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외부 회계<br>감사보고서 제출 | 대 상  |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·학교법인 제외)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기한 |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